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환경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보건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과 건강영향평가 관련 행정규칙(고시)을 마련하기 위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며,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시설 개선명령의 권한 등이 「중앙사무 지방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그 권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안 13조제1항)

나. 건강영향 항목 검토·평가 관련 고시 마련 위임근거 신설(안 제13조제3항)

다. 광역자치단체의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명령 권한 삭제(제22조제1항)

라. 어린이집 등 환경보건교육 지원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4항)

마.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 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

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건강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건강영향 항목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으로 하여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을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으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락을 통지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의 수락에 따른 조치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회수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건협회에 위탁한다.

제22조제3항(중전의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별표 1 제1호가목 중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를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1) 중 “최종처리시설”을 “최종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란 2) 중 “최종처

리시설”을 “최종처분시설”로 하며, 같은 란 3) 중 “중간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아니하게 관리하여야”를 “않게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중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를 “6가크롬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로 하고, 같은 목 2) 중 “질량분율로 0.06퍼센트”를 “합량으로 600mg/kg”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 것이어야”를 “않은 것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크롬 · 구리 · 비소”를 “크롬 · 구리 · 비소”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가크롬”을 “6가크로뮴”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를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폼알데하이드”를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신설규정과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u><신 설></u> (생략) <u><신 설></u>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u>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건강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u> <u>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u> <u>2. 건강영향 항목 내용의 타당성 여부</u> <u>②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u> <u>③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u>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1. ~ 6. (생략)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u>① -----</u> <u>-----</u> <u>-----</u> <u>-----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u> 1. ~ 6.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5. (생략)

<신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락을 통지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의 수락에 따른 조치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회수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조치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삭제>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
된 어린이놀이시설과 제1조의2제
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관
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2.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
사 이행명령

3.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
· 검사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징수

②·③ (생략)

<신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①·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
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를 「환
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
경보건협회에 위탁한다.

③ -----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다. <u><신 설></u> 1. ~ 5. (생 략) ⑤ · ⑥ (생 략)	----- -----.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u>어린이,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 자 노출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u>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6754